

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234

제출년월일: 2004. . 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이유

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·건전성 제고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위원회 위원중 소속 공무원 10명을 4명으로 축소하고, 외부인사 5명을 11명 이내로 확대함. (안 제2조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□ 참고사항 : 붙임

- 관계법령 발췌서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신·구조문 대비표
- 기타
 -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

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

1. 부교육감·교육국장·기획관리국장·기획관리과장
2.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·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 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

③위원장은 부교육감,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.

제2조제4항중 "위촉위원"을 "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소속 공무원중 10인의 당연직 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5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·각 국장·공보관·사담당관·초등교육과장·중등교육과장·교육정보화과장·기획관리과장 및 시설과장으로 하고, 이중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며 기획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.</p> <p>③위촉위원은 교육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, 지역대표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부교육감·교육국장·기획관리국장·기획 관리과장 2.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·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 <p>③위원장은 부교육감,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.</p> <p>④……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……</p>

관 계 법령 발췌 서

■ 지방재정법 [법률 제7159호 2004. 1. 29.]

제6조(교육·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) 이 법에서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 또는 “시·도지사”는 “교육감”으로,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은 “교육인적자원부장관”으로, “행정자치부”는 “교육인적자원부”로, “지방재정”은 “지방교육재정”으로 각각 본다.

제16조(중·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·장기지방재정계획(이하 “지방재정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,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제16조의2(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)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둬다.

②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